대법원 2024도9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살인)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이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9772, 2024전도11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 피고인은 2023. 8. 17. 관악산 등산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구입해 둔 너클 두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든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에 체포됨
- 피해자는 2023. 8. 19.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함

2. 소송경과

▣ 제1심 ➠ 무기징역, 몰수,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은 정당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